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칙

(2021.05.28 개정)

1장 총칙

2장 인문대학 총투표

3장 인문대학 학생총회

4장 인문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장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6장 인문대학 공간관리위원회

7장 인문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8장 인문대학 학생회

9장 인문대학 학과 학생회

10장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11장 재정

12장 인문대학 소학회

13장 인문대학 선거

14장 회칙 개정

부칙

*인문대학 선거시행세부세칙은 별도 파일로 존재함.

1장 총칙

1조 (명칭) 본회는 아주대학교(이하 본교) 인문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회는 능동적인 공동체의 주체로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교와 사회에 기여하고, 대학의 완전한 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설치) 본회는 본교 인문대학 내에 둔다.

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인문대학 재학생, 휴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 인문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전과·자퇴·졸업 등으로 인해 인문대학에 더이상 소속되지 않음과 동시에 자격이 상실된다.
3. 대학원생은 제외된다.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한 바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학생회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제반활동에 관하여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학생행사 참여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생 및 편입생은 재학기간에 비례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및 그에 따른 회원의 권리를 지닌다.
4.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5. 본회의 제반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본회 활동으로 인하여 학교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학교 당국 관계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며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6. 본회의 회원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6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문대학 학생총회, 인문대학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인문대학 및 학과 집행국, 각 학과 소속 소학회로 구성한다.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인문대학 학생총투표 및 학생총회, 인문대학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인문대학 학생회장, 인문대학 부학생회장의 순서로 한다.

2장 인문대학 총투표

7조 (발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문대 학생회장 직권발의
2. 인문대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2/3참여에 참석위원 2/3이상 발의
3. 회원 300인 이상 연서
4. 회원 200인 이상의 임시총회 요구에 의한 발의

8조 (소집) 발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7일 이상 안건 및 발의자를 공고하여 인문대 학생회장은 소집을 해야 한다.

9조 (의결) 제 12장 인문대 학생회 선거 규약과 세부시행세칙을 적용한다.

3장 인문대학 학생총회

10조 (지위) 인문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최고의결권을 갖는다.

11조 (구성) 인문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12조 (권한)

1. 인문대학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2. 인문대학 학생총회는 인문대 학생회 회원 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3. 인문대학 학생총회는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회원의 과반수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인문대학 학생총회는 인문대 학생회 전체에 대한 사항의 의결권을 갖는다.

13조 (의장)

1. 인문대학 학생총회의 의장은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2.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단, 인문대학 회장단의 궐위 또는 소집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이 의장직을 대리한다.)

14조 (소집)

1. 인문대학 학생총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 이유를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인문대학 회장단의 궐위 또는 소집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이 의장직을 대리한다.)
2. 인문대학 학생총회는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인문대 전체학생 과반수의 요구, 회원 200인 이상의 연서,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석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필요 시 인문대 학생회장은 직권으로 발의할 수 있다.

15조 (의결)

1. 일반적인 안건의 경우, 인문대학 학생총회는 전 회원의 1/4 이상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2. 회칙 상 의결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장 인문대학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16조 (지위) 인문대학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이하 인학대회)는 본회의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17조 (의장)

1. 의장은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2.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단, 인문대학 회장단의 궐위 또는 소집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1인이 의장직을 대리한다.)

18조 (구성)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소학회 회장이 구성원이 된다.
(단, 소학회 회원이 대리 참석을 할 경우 위임장을 필히 지참한다.)

19조 (업무 및 권한) 인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회칙 개정발의 및 의결
2. 인문대학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3. 인문대학 총투표 요구권
4. 인문대학, 각 학과 학생회 사업 계획 및 사업 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5.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의권
6. 인문대학 학생회장 및 학생회 임원, 인운위의 출석 요구권
7. 의무감사(회계, 행정) 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징계 건의
8. 예비비 사용에 대한 표결
9. 인문대 학생회와 각 학과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권
10. 기타 인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20조 (소집)

1. 인학대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인문대학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2. 필요 시 의장이 직권발의할 수 있다.
3. 본회의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 요구로 발의할 수 있다.

21조 (안건 상정 및 공고)

1. 인문대학 학생회장의 직권 상정
2. 운영위원회의 상정
3.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 요구로 상정

4. 본회는 입학대회 개최 7일 전에 안건 상정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하고 학과 학생회와 소학회에게 안건 상정에 관한 공문발송 혹은 연락을 취해야 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예외를 둔다.)
5. 기타 안건은 입학대회 발의 정족수가 동의할 시 상정할 수 있다.

22조 (의결) 입학대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1.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2.5.6.7.9항)
2.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19조 1.3.4.8항)
3.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5장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23조 (지위) 인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인운위)는 인문대학 최고의 운영기구이다.

24조 (구성)

1. 인운위는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원을 인문대학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2. 각 학과 및 인문대학 학생회 구성원은 필요 시 인문대학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은 후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25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2.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재 시 인문대학 부학생회장이 대행한다. (단, 인문대학 회장단의 궐위 또는 소집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인문대학 운영위원 중 1인이 의장직을 대리한다.)

26조 (업무 및 권한) 인운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인문대 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인문대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 상정한다. 필요 시 소학회 연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인문대학 학생총회, 입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학생회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을 인문대학 학생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4. 인운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문대학 학생의 요구 또는 위급 시에는 참석자와 회의록을 공개한다.
5. 공개는 대자보 또는 인터넷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인문대학 및 각 학과 학생회에 대한 정기 감사 회의 의무를 가지며 감사 결과를 공개할 의무를 갖는다. (단, 최종 감사는 본교 감사위원회가 진행한다.)
7. 인문대학 및 각 학과 학생회의 학생회비 지분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27조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나눈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인운위에서 결정한다.
3. 임시 운영위원회는 인문대 학생회장의 요구나 인문대학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8조 (의결)

1. 인운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결한다.

6장 인문대학 공간관리위원회

29조 (지위) 인문대학 공간관리위원회(이하 인공관위)는 인문대학의 공간관련 최고 관리기구이다.

30조 (구성)

1. 인공관위의 위원장은 인문대학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2.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회의 학생회장이 위원이 된다. (단, 회장의 부재 및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대리한다.)
3. 공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문대학 내 소학회의 회장이 인공관위의 회원이 된다. (단, 소학회 회원이 대리 참석을 할 경우 위임장을 필히 지참한다.)
4. 위 단위의 위원이 부재 및 궐위 시 해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대체한다.

31조 (회칙)

인공관위는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을 가질 수 있다.

32조 (업무 및 권한)

1. 인공관위는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인공관위 회칙에 대한 개정 및 발의를 할 수 있다.
3. 인문대학 자치 공간에 대한 배치 권한을 가진다.
 - 3-1.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회칙 및 공간재배치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인문대학 공간재배치를 수행한다.
 - 3-2. 인문대학 공간 배치에 관한 부분적인 공간 조정을 한다.
4. 인문대학 공간 재배치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4-1. 교내외 활동내역(수상실적)
 - 4-2. 공간 활용계획
 - 4-3. 총회 참석 여부인공관위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지만 자료 제출 공고 이전에 평가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안내는 간담회 혹은 자료 제출 공고 이전 평가 기준 공고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학생자치활동 공간사용약관(이하 공간사용약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6. 인문대학 자치 공간을 공간사용약관에 따라 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 6-1. 공간사용약관에 따라 인문대학 공간사용관련 징계 심의를 한다.
(단, 공간관리 징계위원회는 30조의 1,2항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 6-2. 최종 징계 결정은 아주대학교 공간관리 징계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 6-3. 경고 1회를 받은 단체는 다음 년도 공간 재배치에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다.
7.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총회(공간총회) 및 전체 인공관위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 7-1. 아주대학교 공간총회 및 전체 인공관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 년도 인문대학 공간재배치 심사에서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다.
8. 공간을 소유한 단체 혹은 회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인공관위 혹은, 아주대학교 공관위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33조 (소집)

1. 인공관위는 전체 인공관위 회의와 임시 인공관위 회의로 나눈다.
2. 전체 인공관위 회의는 30조(구성)에 해당 되는 전 인원으로 구성된다.
3. 전체 인공관위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회원의 1/3의 요구에 의해 소집 될 수 있다.
4. 임시 인공관위 회의는 30조의 1, 2항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5. 임시 인공관위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 될 수 있다.
6. 전체 인공관위 회의는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입학대회와 함께 개최될 수 있다.

34조 (의결)

1. 인공관위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결한다.

7장 인문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35조 (지위)

1. 인문대학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인문대학 학생총회, 입학대회, 인운위, 인문대학 집행국의 장이 된다.
2. 인문대학 부학생회장은 인문대학 공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부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인문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인문대학 학생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36조 (임기) 당해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7조 (업무 및 권한) 인문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교 내, 외 활동에 있어 본회를 대표한다.
2. 인문대학 학생총회, 인학대회, 인운위 소집과 안건 상정의 직권발의권을 갖는다.
3. 기타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갖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4. 인문대학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감사를 감사위원회에게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38조 (사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문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 1-1. 임기 도중 개인 사정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1-2. 임기 말에 다음 연도 선거를 위해 피선거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
2. 위 1항의 1-1의 경우 사퇴서를 작성하여 39조의 절차에 따라 사퇴를 진행한다. (사퇴서 양식은 본교 인문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있다.)
3. 위 1항의 1-2의 경우 해당 연도의 선거 일정과 선거 진행 방법에 따라 사퇴를 진행한다. (선거시행세칙 참고)
4. 위 1항의 1-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5. 학생회장이 사퇴한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업무를 대행한다.
6.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퇴하여 궐위 시,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 그 날로부터 20일(방학은 제외)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 인문대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39조 (사퇴 절차) 사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단, 38조의 1항의 1-1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8조의 1항의 1-2의 경우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사퇴 절차를 적용한다.)

1.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산관에 위치해있는 인문대학 게시판, 인문대학 각 학과 전공강의실(6개) 게시판에 공개 사퇴서를 A2 이상의 크기로 인쇄하여 2주 동안 게시한다.
2.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인문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퇴서를 게시한다.
3. 인운위는 본교 인문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사퇴를 공고한다.
4. 인운위는 인문대학 커뮤니티에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사퇴를 공고한다.

8장 인문대학 집행국

40조 (지위) 인문대학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41조 (구성) 인문대학 집행국은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국의 국장, 차장 및 국원으로 구성된다.

42조 (업무 및 권한) 인문대학 집행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인문대학 학생총회, 인문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인운위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한다.
2. 인문대학 집행국의 사업계획, 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문대학 교학팀에 제출한다.
3. 각 국의 국장은 인문대학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인운위의 요구 시 출석 및 발언을 하여야 한다.

4. 인문대학 집행국은 제반 활동의 집행을 위하여 그에 맞게 원활하게 구성한다.
5. 인문대학 집행국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별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9장 인문대학 학과 집행국

43조 (지위) 인문대학 학과 집행국은 각 학과의 최고 학생 대표 기구이다.

44조 (구성) 인문대학 학과 집행국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해 소속 제 1전공 학생으로 구성한다.

45조 (임기) 당해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6조 (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1. 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과 학생 전체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과 집행국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이 된다.
3. 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인운위에서 인문대학 집행국 사업 전반의 검토, 심의, 조정에 발언권을 가진다.
4. 학과 학생회장은 학과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5. 학과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6. 제 11장 재정에 대해서 인운위와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를 받을 의무를 갖는다.

47조 (회칙) 각 학과 학생회는 본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학과 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질 수 있다.

48조 (사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퇴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각 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 1-1. 임기 도중 개인 사정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1-2. 임기 말에 다음 연도 선거를 위해 피선거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
2. 위 1항의 1-1의 경우 사퇴서를 작성하여 49조에 따라 사퇴를 진행한다. (사퇴서 양식은 본교 인문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있다.)
3. 위 1항의 1-2의 경우 해당 연도의 선거 일정과 선거 진행 방법에 따라 사퇴를 진행한다. (선거시행세칙 참고)
4. 위 1항의 1-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5. 각 학과 학생회장이 사퇴한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과 업무를 대행한다.
6. 각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모두 사퇴하여 궐위 시,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 그 날로부터 20일(방학은 제외)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 인문대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49조 (사퇴 절차) 사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단, 48조의 1항의 1-1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8조의 1항의 1-2의 경우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사퇴 절차를 적용한다.)

1.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산관에 위치해있는 인문대학 게시판, 학과 전공강의실 게시판에

공개 사퇴서를 A2 이상의 크기로 인쇄하여 2주 동안 게시한다.

2.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인문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퇴서를 게시한다.
3. 인운위는 인문대학 커뮤니티 혹은 SNS에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사퇴를 공고한다.
4. 인운위는 인문대학 커뮤니티에 사퇴를 하고자 하는 자의 사퇴를 공고한다.

10장 인문대학 비상대책위원회

50조 (명칭 및 지위)

인문대학 및 각 학과 학생회의 건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이다.

1. 학생회장단이 탄핵 및 사퇴 또는 궐위되었을 때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20일 이상일 경우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20일 이하일 경우, 인문대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2. 선거가 무산되어 궐위된 경우
3. 기타 사유로 기존 학생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51조 (구성)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50조 1,2,3항에 해당되는 경우 구성된다.

1. 인문대학 학생회의 비대위는 당해 인운위로 구성한다.
2. 학과 비대위에 관련된 사항은 인운위에서 결정한다.
3. 비대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52조를 따른다.
4. 인문대학 비대위는 구성 사유, 구성원, 임기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단, 학과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인문대학에서 공고한다.)

5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인문대학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은 전년도 인문대학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전년도 인문대학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요청 시 당해 인운위 중에서 선출하거나,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가운데 당해 인운위에서 심사하고 논의하여 선출한다.
2. 인문대학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가운데 인문대학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이 호선한다. (단, 인문대학 학생회 비대위원장이 요청 시 당해 인운위에서 선출할 수 있다.)
3. 학과 비대위원장은 전년도 학과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전년도 학과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요청 시 당해 인운위 중에서 선출하거나,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가운데 당해 인운위에서 심사하고 논의하여 선출한다.
4. 학과 학생회 비대위 부위원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가운데 각 학과 학생회 비대위 위원장이 호선한다. (단, 학과 학생회 비대위원장이 요청 시 당해 인운위에서 선출할 수 있다.)

53조 (임기) 1. 임기가 120일 이상 남았을 때 설립된 비대위의 경우, 보궐 선거 이후 7일까지로 한다.

2. 임기가 120일 이하 남았을 때 설립된 비대위의 경우, 정규 선거 이후 7일까지로 한다.
3. 선거 무산 시 설립된 비대위의 경우, 보궐 선거 이후 7일까지로 한다.
4. 보궐선거 또한 무산 시 설립된 비대위의 경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4조 (업무 및 권한)

1. 비대위는 인문대학 및 각 학과 학생회의 공백 기간에 학생 회장단과 동일한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2. 보궐선거 이후에도 인문대학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인운위로 업무를 인계한다.
3. 보궐선거 이후에도 '학과'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항을 당해 인운위에서 결정한다.

11장 재정

55조 (재정)

1. 인문대학 학생회의 재정은 총학생회비와 인문대 학생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인문대학 각 학과 학생회의 재정은 인문대 학생회비와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3. 개강 전까지 수납된 신·편입생의 학생회비를 인문대학 및 각 학과 학생회의 지분율로 나눈다.
4. 신·편입생 학생회비는 매년 1월 인운위에서 결정한다.
5. 인문대 및 각 학과 학생회비 지분율은 매년 초 인운위에서 논의 후 결정할 수 있다.
6. 각 학과로 수납된 학생회비를 인문대학 학생회에서 일괄 수납하여, 인운위가 논의한 비율대로 배분한다. (단, 보궐선거 시 4월 내에 배분한다.)
7. 인문대 및 각 학과 학생회가 4월까지 구성되지 못할 시에는 해당 학생회의 지분율을 인운위에서 심의 후 배분한다.

56조 (감사) 인문대학 학생회 및 학과 학생회는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받을 의무가 있다.

1. 감사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이다.
2. 감사는 매 분기마다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받는다.
3. 감사 결과는 인문대학 커뮤니티 또는 대자보를 통해서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개한다.
4. 감사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사위원회 회칙을 따른다.

12장 인문대학 소학회

57조 (지위) 인문대학 소학회는 인문대학 내에 두며 인문대학 학과 소속 자치 기구로서 인문대학 주요 업무 및 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며 학회 운영에 있어 다른 자치기구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58조 (업무 및 권한)

1. 인문대학 각 소학회 회장은 소학회 구성원을 대표하여 인학대회의 위원이 된다.
2. 인문대학 각 소학회 회장은 인학대회에서 인문대학 및 각 학과 학생회 사업 전반의 검토, 심의, 조정에 발언권을 가지며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3. 인문대학 각 소학회 회장은 소학회 구성원을 대표하여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와 인문대학 공간관리위원회의 회원이 된다.
4. 새내기 새로 배움터의 참여권과 홍보권을 갖는다.

59조 (소학회의 의무)

1. 인문대학 소속 각 소학회 회장은 소학회 구성원을 대표하여 인학대회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다.
2. 입학대회 불참 시 경고 1회 조치한다. 소학회 회장의 부재 시 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부회장도 부재 시에는 소학회 회원 중 1인이 대리참석을 할 수 있다. (단, 부회장 또는 소학회 회원이 대리참석을 할 경우 위임장을 필히 지참한다. 지참하지 않을 경우, 주의 1회 조치한다.)
 - 2-1. 주의 2회시, 경고 1회 조치한다.
 - 2-2. 입학대회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할 경우, 경고 1회 조치하며, 경고 2회 받았을 경우, 입학대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3. 인문대학 소속 각 소학회 회장, 부회장 중 1인은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총회와 전체 인공관위 회의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4. 아주대학교 공간관리위원회 총회와 전체 인공관위 회의에 불참 시 다음 연도 인문대학 공간재배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소학회 회장, 부회장의 부재 시에는 소학회 회원 중 1인이 대리참석을 할 수 있다. 단, 대리참석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5. 새내기 새로 배움터 기획단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13장 인문대학 선거

60조 (선거 시기)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임기 연도 전 년의 11월 중에 선출한다.

61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회의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62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아래 해당사항의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문대학의 경우,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학과의 경우, 국어국문 50인, 영어영문 100인, 불어불문 50인, 사학 50인, 문화콘텐츠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인문대학 학생회의 경우,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임기연도 3학년 이상의 학년에 적을 둔 품행방정한 자.
4. 학과 학생회의 경우,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임기연도 2학년 이상의 학년에 적을 둔 행실이 바른 자로 한다.
5. 누계 평점이 2.0이상이고 2개 학기 이상의 학사경고,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6. 인문대학 전체 대표자 및 당해 연도 학생회 임원진 중 추천인 서명 이전에 사퇴한 자. (단, 피선거권을 얻고자 하는 자와 선거운동원은 사퇴서를 인문대학 커뮤니티에 게시를 하고,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선거관리에 관여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63조 (인문대학 선거관리 위원회)

1.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선관위) 구성은 인문대학 운영위원으로 한다.
2.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3.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피위임자격은 학과 학생회장단 이상의 직선대표자로 한다.
4. 선관위는 선거 공고 전까지 구성한다.
5. 선관위는 당해 연도 선거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체한다.

64조 (선거방법) 선거는 선거 4원칙 (보통, 직접, 비밀, 평등)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65조 (임기)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기한다.

66조 (보궐선거) 학생회장단의 궐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 그 날로부터 20일(방학은 제외)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인문대운영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한다.)
2. 재선거 실시 후에도 등록자가 없으면 그 다음해 3월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 보궐선거에서 또한 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10장에 의거하여 비대위를 구성한다.

67조 (선거시행세칙)

1.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2. 오프라인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선거를 시작하기 전, 인선관위의 논의를 통해, '아주대학교 온라인 선거시행세칙'과 더불어 적용해야 하는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에 관해 결정하고, 선거일정공고에 함께 공표한다.

14장 회칙 개정

68조 (발의) 본회의 회칙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인문대학 학생회장의 발의
2. 인학대회 재적인원 1/3 이상의 발의
3. 인운위 1/3이상의 발의
4. 회원 200인 이상의 발의

69조 (의결) 회칙개정 발의시 인문대학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발의된 회칙개정안에 관한 표결을 22조 2항, 3항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70조 (공포)

1. 개정된 회칙은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2.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학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 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 본 회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본 회칙은2012년 3월 30일 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본 회칙은2013년 2월 29일 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본 회칙은2013년 10월 29일 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본 회칙은 2014년 6월 9일 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본 회칙은 2014년 12월 10일 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본 회칙은 2015년 2월 6일 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대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본 회칙은 2016년 2월 16일 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본 회칙은 2016년 11월 3일 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대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 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 본 회칙은 2017년 11월 8일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대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 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 본 회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공포한다.

부 칙

1. (발행) 본 회칙은 인문대 학장에게 보고하고 인문대 학생회장이 공고하며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 학생회 자치활동의 회칙은 폐지한다.
2. (시행) 본 회칙은 2021년 5월 28일부터 공포한다.